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7.15.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유아 섬유제품 (하이체어의 커버, 방수쿠션) 미국 수출 시 트래킹라벨 및 관련 규제는?

(답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개요

1. 트래킹라벨 사이즈 규격 혹은 양식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의 의무 규격(사이즈)은 없습니다. 정해진 디자인도 없으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정보가 명확하게 읽히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형태여야 합니다.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설계하였거나 의도한 어린이용 제품은 뚜렷하고 영구적인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적 라벨”이라고 부름) 그러한 표시는;

-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며,
- 특정한 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유아용이나 어린이용 내구성 제품을 만든다면, 당신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제품 등록 카드를 추가로 구비하고 포장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추적 라벨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조업자나 라벨부착자 개인 이름;
2. 제품 생산지의 위치와 생산 일자;
3. 제조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즉, 배치번호나 런번호, 또는 다른 식별할 수 있는 특징 등.
4. 제품의 원천확인을 촉진시켜 주는 다른 정보

모든 제품 추적 정보 내용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적 라벨 의무사항을 따르는 것은 미래에 제품 리콜이 있을 경우에 효율성과 반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상업활동에서 CPSC 직원과 기업들을 도와줍니다. 제품의 구성품이 유해성이나 법규 위반의 원천으로 확인된 경우에, 추적 라벨은 그와 같은 구성품이 있는 다른 제품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출처: CPSC > Tracking Label Requirement for Children's Products 한국어버전

<https://www.cpsc.gov/ko/content/tracking-label-requirement-for-childrens-products>

The Commission has not provided specifications or drafted a sample tracking label because each type of consumer product may warrant a different type of tracking label. If you are a manufacturer, importer, or private labeler, and have satisfied all of the requirements in 15 U.S.C. § 2063(a)(5)(A), you have satisfied the legal requirement.

- 15 U.S.C. § 2063(a)(5)(A)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5-section2063&num=0&edition=prelim#:~:text=\(5\)\(A\)%20Effective,other%20identifying%20characteristic](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5-section2063&num=0&edition=prelim#:~:text=(5)(A)%20Effective,other%20identifying%20characteristic)

* 출처: CPSC > Tracking Label FAQ <https://www.cpsc.gov/FAQ/Tracking-Label>

2. 들어가는 필수 정보에 배치번호 대신 소상공인이라서 생산년월로 트래킹이 가능한데, 배치번호/LOT번호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같은 사양을 2026년 7월에 여러 번 생산했다면 어느 생산분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CPSC도 별도의 복잡한 LOT 체계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제품과 생산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식별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동일 사유로, SKU번호 체계 대신 상품명/사이즈/컬러 등만 적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PSC의 Tracking Label 요구사항(15 U.S.C. §2063(a)(5)(A))을 보면, 필수는 SKU 자체가 아니라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식별정보(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s)입니다. CPSC는 다음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생산 장소
- 생산일(월/년으로도 가능)
- 제조공정에 대한 상세 정보(예: Batch 또는 Run 번호) 또는 다른 식별 가능한 특징(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s)
-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다만 상품명/사이즈/컬러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CPSC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해당 제품을 다른 생산분과 구분하여 추적할 수 있는지입니다.

4. 온라인 판매물이라 모두 배송됩니다. 규정 상으로는 "제품에 부착한 트래킹라벨 외에 최외장재에도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한다"고 하는데 트래킹라벨 내용을 배송박스 혹은 택배봉투에도 적어야하는지요? 저희는 투명 opp에 제품을 담아, 불투명한 크라프트택배박스/택배봉투를 이용 중입니다.

CPSC의 법령(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에서는 제품(product)과 포장(packaging) 모두에 트래킹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packaging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소매 판매용 포장(retail packaging)을 의미하며, 운송을 위한 택배박스(shipping carton)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 그 외 추가로 혹시 주의할 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구재가 있는 유아 및 아동용 제품(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관련 규정

- 16 CFR Part 113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part-1130>

규제 개요

내구재가 있는 유아 및 아동용 제품(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에는 모두 제품 등록 양식이 필수입니다. 이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제품 회수 또는 기타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방규정 16 CFR § 1130.4에 따라,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 연락처 정보(미국 주소 및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무료 전화번호), 모델명 및 모델 번호, 제조일자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용 제품에 대한 추적 라벨 부착 의무(the tracking label requirement) 외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서 간략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CPSC > Labeling Requirements for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roduct-and-Outer-Package-Labeling-Requirements-for-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

제품 등록 양식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 회수 또는 기타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Registration Forms Business Guidanc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Durable-Infant-or-Toddler-Product-Consumer-Registration-Cards>

- CPSC > Registration form FAQs

<https://www.cpsc.gov/FAQ/Registration-Cards>

대상제품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되었거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으로 16 CFR § 1130.2(a)에서 제품 정의 및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지지쿠션이나 하이체어 자체는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커버하는 섬유커버는 별도의 부가상품/제품 액세서리로 봤을 때,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를 포함한 완제품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관련 규정 원문에서 검토 후 CPSC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SBO contact form

Toll-free: (888) 531-9070

Email: SBO@cpsc.gov

* 출처

- CPSC >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

- CPSC >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FAQ

<https://www.cpsc.gov/FAQ/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

▶ 섬유제품

관련 규정

미국의 섬유제품의 규제는 아래의 5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州)마다 규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관	범주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	Country of origin for most imported products (원산지표시)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Flammability (가연성), Children's products (어린이용 제품),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청)	Pesticides (살충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Labeling (세탁방법, 섬유조성 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무부)	Organic claims (유기농 섬유)

규제 개요

미국에 의류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규정은 없지만 가정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규제 및 라벨링을 준수해야하며 넓은 범위로 섬유제품에 대해 준수해야 할 규제 및 규격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섬유제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의 경우 섬유제품 규제 면제대상이거나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는 CPSC의 가연성시험 및 FTC 라벨링 규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CBP 소관)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구성 및 케어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FTC 소관), Flammable Fabr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은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CPSC 소관).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관련규제는 EPA(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기농 섬유일 경우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USDA(농무부)의 유기농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는 연방법 상에 공통규제 내용이며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미국 국가의 특성상 별도의 주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州)마다 법의 엄격한 정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가이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What are the regulations for importing textiles?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05/~regulations-for-importing-textiles

- NIST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www.nist.gov/publications/guide-united-states-apparel-and-household-textiles-compliance-requirements>

-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OTEXA) > U.S. Labeling Requirements for Textile, Apparel, Footwear and Travel Goods

https://otexa.trade.gov/us_labeling.htm

- ASTM > Textile Standards <https://www.astm.org/Standards/textile-standards.html>

▶ 유아/어린이용 섬유제품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유아/어린이용 섬유제품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규제를 받으며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관련법안을 준수한 후 CPC인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선적 시 첨부해야 합니다.

- CPSC > Children's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childrens-products/>

(Does a children's product include products that are intended to be used "with" children? 확인)

- CPSC > Overview of U.S. Requirements for Textiles/Apparel

<https://www.cpsc.gov/s3fs-public/Session%204%20Textiles%20En.pdf>

어린이용 제품에 쓰이는 섬유 가연성에 대한 규격 및 제품의 '납(lead)'함유량 규제 같은 화학물 규제 등의 자세한 규제사항 및 규격은 아래 관할기관인 CPSC 자료 링크에 상술되어 있으니 반드시 원문(영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Overview of U.S. Requirements for Textiles/Apparel

<https://www.cpsc.gov/s3fs-public/Session%204%20Textiles%20En.pdf>

(Lead - Clothing and Textiles 항목 확인)

▶ 주별규제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 주별 규제 및 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세관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예: 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13755>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7.15.]

▶ 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ÜV SÜD / 02-3215-1100 / www.tuv-sud.kr
- TÜ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UL Solutions <https://korea.ul.com/>
- 기타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국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 기관 성격의 인증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지원 사업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시흥시 2026년 해외 쇼핑몰(온라인) 입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st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Rn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LN_00000000119929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6년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st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Rn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LN_00000000119929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026년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과 ‘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주 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인증 표준 콜센터